

서울특별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1. 회부경위

가. 의안번호 : 제2587호

나. 발의자 : 김경 의원 외 14명

다. 발의일자 : 2025년 3월 31일

라. 회부일자 : 2025년 4월 2일

2. 제안이유

- 관광은 일상을 벗어나 여가와 삶의 전환을 위해 다른 지역이나 나라로 여행하는 것을 이야기함. 여행의 흐름에 있어 여행객의 취향 또한 사회·문화·경제적 여건에 따라 수시로 변화하고 있음. 이에 한국관광공사는 매년 올해 관광트렌드를 발표하는 등 변화무쌍한 여행객의 관광 수요를 파악해 니즈에 부합한 관광 공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음.
- 특히, 정부는 「관광기본법」에 따라 매년 관광진흥에 대한 연차 보고를 정기국회가 시작하기 전까지 제출하여 새로운 관광 변화에 대하여 정부의 대응 등 주요 정책을 매년 의회가 점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기에 우리나라 관광의 상당한 부분을 차

지하고 있는 서울 관광의 시책과 동향에 대해서도 의회가 정례적인 보고를 받을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

3. 주요내용

가. 관광 시책 및 동향에 대한 시장의 보고 사항 신설(안 제6조의2).

4. 검토의견(수석전문위원 강옥심)

가. 개정안의 개요

- 동 개정조례안은 중장기적으로 수립·시행하고 있는 서울시 관광진흥종합계획에 따라 매년 새롭게 시작되는 시책과 서울관광에 대한 동향에 대한 연차보고서를 작성하여 정례회 이전에 보고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기 위하여 발의되었음.

나. 관광진흥계획의 연차보고 필요성

- 서울시는 최근 10년간 서울관광의 진흥을 위하여 2차례 관광진흥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최근 수립한 관광진흥계획의 주요 목표는 아래와 같음.

< 최근 10년간(2016~2025) 관광진흥종합계획 주요 내용 >

연번	계획수립 시점(적용연도)	비전	주요 목표
1	2018.10.(2019~2023)	모두를 위한 지속 성장 스마트 관광도시	·외래관광객: 2,300만명 ·내국인관광객: 2,700만명
2	2022.09.(2022~2026)	고품격 글로벌 관광 도시	·외래관광객: 2,800만명 ·체류일: 7일

- 서울시가 최근 수립한 2022년도 관광진흥종합계획은 ‘고품격 글로벌 관광 도시’라는 비전을 바탕으로 2026년 외래관광객 2,800만명, 체류일 7일을 목표로 삼았고, 이를 바탕으로 다음 해에 ‘서울관광 미래비전’이라는 시책을 수립하여, 3·3·7·7(3천만 외래관광객, 300만원 지출액, 7일 체류일, 70% 재방문율) 목표를 제시한 바 있음.
- 다만 최근 10년간 수립한 관광진흥종합계획에 따른 연차별 시행계획은 2023년 9월에 수립한 ‘3천만 관광시대 도시관광전략 서울관광 미래비전’을 제외하면 전무한 상황이므로 의회 차원에서 종합계획이 연도별로 적절히 추진되고 있는지에 대한 확인 및 점검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한편 정부는 「관광기본법」 제4조에 따라 매년 관광진흥에 관한 정책과 동향에 대한 보고서를 정기국회가 개시되기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고 있으며, 해당 조항은 「관광기본법」이 제정된 1975년 12월 31일부터 시행되고 있음.
- 연차보고는 사업의 기본목적, 미션, 주요 사업내용, 예산, 성과, 사업과 관련된 환경 등 모든 정보를 정기적·종합적으로 검토 및 제시함으로써 여러 이해 관계자들과 소통하기 위한 방식 중 하나임.

의회는 연차보고를 통해 서울시의 관광 정책에 대한 관리·감독 기능을 강화할 수 있으며, 서울시가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는 관광진흥종합계획의 연차별 시행 내역과 서울 관광의 현황을 정례적으로 확인함으로써 의회의 감시와 견제의 기능을 효과적으로 행사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됨.

- 또한 관광 분야는 외래관광객의 수, 외래관광객의 주요 방문 목적 및 방문지, 외래관광객의 소비액을 매년 통계화하여 주기적으로 공표하고 있으므로 연차보고서의 작성에도 특별한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판단됨.

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

(1) 연차보고(안 제6조의2)

- 동 개정안은 시장이 수립한 관광진흥종합계획의 연차별 시책과 관련한 서울 관광 동향에 대하여 의회의 제1차 정례회가 시작하기 전까지 보고서를 작성하여 소관 상임위에 보고 하도록 연차보고 조항을 신설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음.

< 관련 신.구조문 대비표 >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6조의2(연차보고) 시장은 매년 관광진 흥종합계획에 따른 시책과 동향에 대한 보고서를 서울특별시의회 제1차 정례회의가 시작하기 전까지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연차보고를 명시한 법률을 살펴보면 「과학기술기본법」, 「산림기본법」, 「소상공인기본법」, 「관광기본법」, 「문화기본법」 등 국가의 중요 분야의 제도와 정책의 기본방침인 기본법이며, 「관광기본법」은 서울 관광의 기본적인 방향과 정책수립과정을 명시하

고 있는 동 조례안 특성과 유사하므로 여러 기본법에 명시되어 있는 바와 같이 연차보고를 실시하는 것은 기존 법체계에도 부합함.

- 또한 자치입법에 대한 법제처 의견제시 사례¹⁾에서 연차보고는 「지방자치법」 제48조제1항 및 제51조의 규정에 따라 지방의회가 집행기관에게 요청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으므로 동 개정안의 법제적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됨.

< 법제처 의견제시 사례 관련 관계법령 >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48조(서류제출 요구) ① 본회의나 위원회는 그 의결로 안건의 심의와 직접 관련된 서류의 제출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제51조(행정사무처리상황의 보고와 질의응답)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관계 공무원은 지방의회나 그 위원회에 출석하여 행정사무의 처리상황을 보고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고 질문에 답변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관계 공무원은 지방의회나 그 위원회가 요구하면 출석·답변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이유가 있으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계 공무원에게 출석·답변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지방의회나 그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은 조례로 정한다. |
|--|

- 아울러 서울시에도 연차보고를 명시한 조례²⁾가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는 사례가 확인되므로 동 조례안의 내용은 시의 핵심 사업인 서울 관광진흥의 방향과 목표를 점검하는데 필요한 부분으로 판단됨.

1) 법제처 2023. 9. 27. 의견제시 23-0376

2) 「서울특별시 게임산업 육성 및 이스포츠 활성화 지원 조례」, 「서울특별시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등

의안번호
2587

서울특별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 의	제 안 자	제안일자	소관 상임위
	김경의원	2025. 3. 31.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주요내용	<p><제안이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새로운 관광 변화에 따른 집행부의 관광 정책이 주요한지 의회에서 점검할 수 있도록 매년 제1차 정례회(결산) 전 집행부가 서울관광 시책 및 동향에 대해 보고를 추진하도록 함 <p><주요 입법 요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특별시 관광진흥종합계획 추진에 따른 시책 및 동향 연차보고 조항 신설 (안 제6조의 제2항) 		
추진경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5. 3. 31. 조례안 발의(대표 발의자 : 김경 의원) - (발의자) 김규남, 김기덕, 김형재 등 15명 		
부 검토 의견	원안가결(○) / 수정가결 () / 부결() / 보류()		
쟁점사항 (의회동향, 문제점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 조례안은 매년 관광 시책 및 동향 등을 시의회에 보고하는 내용을 반영한 것으로 ○ 수시로 변화하는 관광환경을 고려한 관광정책이 시행되고 있는지 확인이 필요한 사항이므로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동의함 		
대응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없음 		
상 임 위 처리결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임위 안건처리 후 작성 		
향후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임위 안건처리 후 작성 		
담당부서	관광정책과	팀장	남규하(☎2133-2805)
		담당	남규현(☎2133-2804)